

제267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8년 2월 1일 (금)

심 사 보 고 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1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8. 2. 1.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4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 1. 2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1991년에 설립한 충북학사의 시설노후와 공간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및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함에 한계가 있어

나. 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

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충북학사를 신축·이전한다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바 있음.

다. 이에 따라 학사의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 매입 등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충북학사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처분 : 충북학사 매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176-2외 1필지
- 재산규모
 - 토 지 : 2필지 2,775.60m²
 - 건 물 : 1동 지하1층·지상6층 4,225.61m²
- 매각시기 : 2008. 1 ~
- 재산가액 : 20,661백만원(대장가액)
- 매각조건
 - 충북학사가 신축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 재산명도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준공 후 16년이 경과하여 시설노후 및 공간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충북학사의 신축·이전문제는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정 현안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충북학사의 신축·이전계획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¹⁾이 제266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2007.12.21)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음.

금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충북학사 신축·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충북학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현재 충북학사 이용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각조건(충북학사가 신축건물로 이전한 이후에 재산명도)을 설정한 것은 이해

1)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충북학사 이전신축)

- 위 치 : 서울특별시 소재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3,600㎡ 정도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8층 10,000㎡
- 사업기간 : 2007. 12 ~ 2009. 12(2년간)
- 사 업 비 : 45,000백만원(도비)

가 되나, 그럴 경우 재산가치에 의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는 만큼, 매각시기를 신축학사 준공시점이 아닌 착공이 전인 2008년 1월 이후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08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 유	매 수 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1 건	2,775.60	2,775.60	18,847,680				
	건물	1 건	4,225.61	4,225.61	1,786,490				
	기타								
1	토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6-2번지외 1필지	2,775.60	2,775.60	18,847,680	'08.1~	충북학사 신축이전 재원충당	공 개 매 각	
	건물	"	4,225.61	4,225.61	1,786,490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0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